

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운영위원회운영내규

제정 2016. 3. 17.

개정 2018. 2. 14.

개정 2019. 4. 18.

개정 2021. 6. 15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‘공단’ 이라 한다) 시민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 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장 시민운영위원회

제3조(기능) ① 시민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개진 및 자문에 응한다.

1. 공단의 종합 경영전략 및 부문별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
2. 공단의 기본시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공단의 각종 부서의 소관업무(사업추진)에 관한 사항
3. 기타 이사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 외에 공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, 공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[본항 신설 2019.4.18.]
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

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별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④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필요시 각 부서의 팀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⑤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공단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지역원로 및 각계 대표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임기 등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2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.

1.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지 못하였거나, 위원회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 그 밖에 이사장이 위원회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<개정 2018.2.14., 2021.6.15.>

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6.15.>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
2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
3. 업무상 취득한 사업기밀을 유포 또는 이용하여 공단의 명예 또는 업무상 피해를 끼쳤을 때

4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5. 타 법률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이사장이 판단할 때

④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료 열람·제출 요구, 관련인 진술 및 의견 청취 (출석요구)
2. 절차적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 등 제도개선 건의·요구
3.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요구·시정요구, 관련자의 적절한 조치 요구
4. 처리상황 및 결과에 대한 대외 공표 등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수석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자문을 위하여 안전별로 미리 위원을 지정하여 연구·검토하게 하거나 이를 위원회에서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제8조 의한 분과위원회 간 검토 결과가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검토·조정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외에 별도의 분과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업운영 분과위원회(사업운영) : 공단사업관련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 발굴·개선
2. 시설운영 분과위원회(시설운영·안전관리) : 시설이용 불편사항 및 위험 시설 등 재난사고 발생우려사항 제보 및 개선요구
3. 기획행정 분과위원회(정책자문) : 공단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판단, 부패방지(예방)·청렴정책 자문 및 평가, 공단 제도 개선 건의·요구
4. 환경관리 분과위원회(환경관리·복지) :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민원 조사·처리

제8조(분과위원회 구성)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칠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4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이사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 간에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한 후 간사로 하여금 미리 소집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기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해당 분과위원회는 [별표1]서식에 의거, 분과회의를 거친 의안 내용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고, 간사는 업무총괄 부서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.

제11조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 진행 및 그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제12조(심의안건제출) ①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심의안건이 2개부서 이상의 소관 사항이거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합의 또는 협조를 마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

을 요하는 사항인 안전 또는 관계 부서 간에 합의 또는 협조를 마치지 못한 안전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심의안전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심의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.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공단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.

제14조(심의결과의 통보) 간사는 회의의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,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심의결과의 사후조치)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6조(관계기관과의 협조) 시민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.

제17조(비밀유지) 위원회의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보칙

제18조(수당 등의 지급) 시민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

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2. 14>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4. 18.>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.1.1.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21. 6. 15.>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제목 : _____ (안)

(_____ 분과) 위원회		
위원장	성 명	확인서명
부위원장		
간 사		
위 원		
위 원		
위 원		
위 원		
위 원		
위 원		
위 원		
위 원		
위 원		
위 원		
위 원		
위 원		
위 원		

위 안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심의·의결합니다.

20

_____ (분과)위원장 _____ (서명)

심의·의결 보고서 (안)

심의안건 :

심의과제 선정배경(자체 발굴과제만 해당)

-
-
-

위원회(분과)위원별 주요의견

- _____위원 :
- _____위원 :
- _____위원 :
- _____위원 :
- _____위원 :
- _____위원 :
- _____위원:

위원회(분과) 종합의견

-
-